

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8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4. 17. 김향숙 의원 등 5인
나. 회 부 일 자: 2026. 4. 2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5. 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, 마을 공동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4)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5)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건축법」, 「건축물관리법」,
「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9호
 - 예고기간: 2026. 4. 17.(금) ~ 4. 23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가. 검토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사무에 해당하며, 「건축물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경상남도 관련 조례와의 체계적 정합성도 유지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제정 권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창고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환경 저해 문제 해소가 필요하며, 이를 주민 공동시설로 전환할 경우 지역공동체 기능 회복 및 시설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
- 소규모 예산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, 공익성 및 정책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임.
- 실태조사, 지원대상 선정, 보조금 관리 등 행정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단계적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현실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와 주민 공동공간 재활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,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, 또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, 행정 집행 가능성,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